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771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2. 11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피고 B은 원고에게 7,437,200원 및 2024. 8. 30.부터 위 1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이재석

별지